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89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소병훈・이병진・이기헌

김교흥 • 박 정 • 허 영

박홍배 • 이재관 • 권칠승

안태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편의시설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은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,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포괄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함.

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이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5(중견기업은 100분의 10, 중소기업은 100분의 15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24조에 따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 제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